



연말정산 소득·세액공제 요건표



구 分	공 제 요 건				비 고	
	나이요건*	소득요건*	동거 요 건			
			주민등록동거	일시퇴거 허용		
기 본 공 제	본인	×	×	×		
	배우자	×	○	×		
	직계존속	60세 이상	○	△ (주거형편상 별거 허용)	1964.12.31. 0 전	
	직계비속, 동거입양자	20세 이하	○	×	2004. 1. 1. 0 후	
	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	×	○	×		
	형제자매	60세 이상 20세 이하	○	○	○ 1964.12.31. 0 전 2004. 1. 1. 0 후	
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×	○	○	○	
추 가 공 제	위탁아동		○			
	장애인	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				
	경로우대	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				
	부녀자	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)				
	한부모	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(20세 이하)가 있는 자				
연금보험료 공제		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				

* **나이요건**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

* **소득요건**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)

구 分	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		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	비 고
	나이요건	소득요건		
특별 소득공제	보험료	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(건강·노인장기요양·고용보험료)		
	주택자금공제	-	○	본인만 가능
그 밖의 소득공제	개인연금저축	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(배우자,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)		
	주택마련저축	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		
	신용카드 등	×	○	형제자매 제외
자녀세액공제 (8세이상)		-	기본공제대상 자녀 (입양자·위탁아동·손자녀 포함)	2016.12.31. 이전
연금계좌세액공제		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(배우자,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)		
특별 세액공제	보장성보험료	○	○	
	의료비	×	×	○
	교육비	×	○	직계존속 제외 *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, 직계존속도 가능
	기부금	×	○	× 기본공제대상자 * 정치자금기부금, 고향사랑기부금,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
표준세액공제		특별소득공제, 특별세액공제,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(13만원) 적용		



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



항목	과다공제 사례
① 소득금액 기준(1백만 원) 초과 부양가족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연간 소득금액(근로·사업·양도·퇴직소득 등)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(기본+추가공제) *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
② 부양가족 중복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
③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
④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·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
⑤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·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
⑥ 교육비·의료비 등 중복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
⑦ 주택자금 과다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유주택자*임에도 주택자금(월세액 포함) 공제 *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
⑧ 교육비 과다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자녀,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(비과세)을 지원받거나,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
⑨ 의료비 과다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「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」 상당액을 공제
⑩ 중소기업취업자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감면대상 업종*이 아님에도 감면 신청 * 제외업종(예시) : 전문서비스업, 보건업, 금융 및 보험업, 교육서비스업 등

* ① ~ ⑤의 경우,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(기본공제+추가공제) 뿐만 아니라,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(보험료, 교육비, 신용카드, 기부금 등) 또한 배제



부양가족 공제

-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, 며느리, 사위, 삼촌, 외삼촌, 고모, 이모, 조카, 사촌,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. 특히,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·양도소득(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)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.
-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,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.
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

- '24.12.31.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(세대원 포함)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.
- 취득 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.
-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
-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
연금계좌 세액공제

-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.
-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.
-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보험료 세액공제

-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(피보험자)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.

의료비 세액공제

-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(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)
-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·국민건강보험공단(본인 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)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교육비 세액공제

-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.
-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
기부금 세액공제

-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

-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·신용카드 등 사용금액·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입니다.